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의 비공식 양육비 제공

- 가족구조의 영향을 중심으로 -*

최 유 석

(한림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미국 위스컨신 주에서 수행된 아동양육비 이행 시범사업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와 자녀를 양육하는 빈곤층 어머니의 가족구조 특성이 아버지가 제공하는 비공식 양육비 수준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공식 양육비 수준은 해당 자녀 부모의 현재 결혼상태, 자녀의 출생 당시 결혼상태와 관련이 있었다. 아버지의 자녀를 낳은 배우자 수는 비공식 양육비 수준과 관계가 없었다. 여러 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가진 경우, 아버지는 첫 번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게 더 많은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하였다. 아버지 자녀의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자녀의 형제/자매의 존재, 해당자녀의 이복형제 등 또 다른 자녀의 존재도 비공식 양육비 수준과 관련을 맺었다. 또한 공식적 아동양육비와 비공식적 아동양육비는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혔다.

주제어: 가족구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 비공식 양육비, 공식적 양육비, 아동양육비 이행제도

1. 서론

한국사회에서 이혼율 및 재혼율의 증가로 인해, 이혼 후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 재혼 후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등 가족구조가 다양해지고 있다(통계

* 이 논문은 2009년도 한림대학교 교비 학술연구비(HRF-2009-203)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필자의 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보완한 것으로, 2010년 3월 한국사회복지연구회에서 발표한 것임. 토론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구인회, 홍백의 교수님, 귀중한 논평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 2008; 성정현 외, 2001; 홍백의 외, 2009). 특히,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재혼은 이전 배우자 간의 협력적인 부모역할수행과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한경혜·김영희, 1994; 유희정, 2005; Ahrons and Wallish, 1987).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자녀양육비 확보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며, 자녀양육문제가 발생하는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박복순, 2006; 차선자, 2006; 정현수, 2005).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복잡해지는 가족구조의 특성과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의 빈곤층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미혼모 출산, 동거, 이혼 및 재혼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조가 출현하였다(Furstenberg and King, 1999). 미혼출산 또는 이혼 후, 자녀와 살지 않는 아버지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새로운 배우자¹⁾와 결혼하거나, 새배우자와 자녀를 출산하여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한다. 재혼 및 양부모가족(step-families), 여러 명의 배우자와의 출산에 관한 최근 연구는 이러한 복잡해지는 가족구조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탐색하여 왔다(Carlson and Furstenberg, 2006; Furstenberg and King, 1999; Guzzo and Furstenberg, 2007a; Guzzo and Furstenberg, 2007b; Manlove et.al., 2008; Meyer, Cancian and Cook, 2005; Mincy, 2001). 또한 가족구조와 자녀와 살지 않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양육참여(father involvement)간의 관계를 밝히거나(Cooksey and Craig, 1998; Seltzer and Bianchi, 1988; Manning and Smock, 1999, 2000), 가족구조와 아동발달 또는 문제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Carlson, 2006; Hofferth, 2006).

복잡해지는 가족구조는 이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의 자녀양육비 지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재혼한 아버지는 이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 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책임을 동시에 지게 된다(Cherlin, 1981: 885). 복수의 가족부양책임을 아버지가 관여된 여러 가족 간에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의사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Clark and Kenney, 2006).

한편, 해당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우, 현재 가구구성에 따라 자녀와 살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해당 자녀의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요구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아버지는 해당 자녀의 의붓아버지가 가족부양 책임을 질 것으로 간주하여, 자녀양육비 제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출산 또는 이혼 후, 자녀와 살지 않는 아버지와 자녀를 양육하는 빈곤층 어머니의 가족구조 특성이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위스컨신 주에서 시행되었던 아동양육비 시범사업(The Child Support Demonstration Evaluation(CSDE) project)의 일환으로 실시된 설문조사(The Survey of Wisconsin Works Families)를 이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구조와 자녀에 대한 비공식 양육비(informal

1) 본 연구에서는 결혼한 배우자(spouse)와 사실상 관계로 동거하는 동거인(partner)을 통칭하여, 편의상 배우자로 표현하고자 한다. 실제 분석에서 결혼과 동거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와 동거인을 구분하여 사용할 것이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아버지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녀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support) 제공수준 간의 관계를 주로 살펴 볼 것이다. 비공식 양육비는 아동양육비 이행제도(child support)²⁾에 의해 집행되는 공식적 아동양육비를 제외한 각종 현물(예:의복, 선물) 또는 현금으로 제공되는 사적인 양육비를 지칭한다.

가족구조와 자녀와 살지 않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공식적 아동양육비(formal child support)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Manning and Smock, 2000; Manning, Stewart, and Smock, 2003; Meyer, Cancian and Cook, 2005).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 양육비 제공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양육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양육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비공식 양육비 지급에 관한 연구는 공식적 양육비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다(Seltzer and Schaeffer, 2001; Nepomnyaschy and Garfinkel, 2007; Nepomnyaschy, 2008; Teachman, 1991). 특히, 이혼 또는 미혼출산 이후 헤어져 사는 해당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속한 가족구조의 특성이 아버지의 비공식 양육비 지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힌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해당자녀 부모의 재혼, 신규출산 등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자녀양육비 제공 행위의 변화는 비공식적 자녀양육비 제공에서 더 잘 드러난다. 비공식 양육비와는 달리, 공식적 양육비는 양육비 이행명령의 지급액 결정방식, 행정기관의 집행능력, 아버지의 납부능력 등 제도적 특성이 지급액의 상당 부분을 결정한다(Garfinkel et. al., 1998). 반면에 아버지는 비공식 양육비 제공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량권을 갖는다. 따라서,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 양육비 의사결정의 차이는 비공식 양육비 제공행위에서 더 잘 관찰될 수 있다.

비공식 양육비 결정에서 가족구조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해당 자녀와 살지 않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해당 자녀와 살지 않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존의 아동양육비 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공식적 아동양육비를 대상으로, 부모 쌍방의 양육비 제공에 관한 선호와 인센티브(Argys and Peters, 2003), 또는 아동양육비 이행명령제도의 효과를 주로 다루어 왔다(Graham and Beller, 2002; Argys and Peters, 2003).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서 부각되지 못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둘러싼 가족구조의 다양한 형태와 상이한 구성요소에 주목함으로써, 자녀양육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2) 아동양육비 이행(명령)제도(child support)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소득의 일정 부분을 아동양육비로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이다(Huang and Pouncy, 2005).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 지급 등 아동양육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아동양육비 집행기관(Child Support Agency)이 개입해서, 친자임을 확인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양육비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한다. 본 연구에서 공식적 아동양육비(formal child support)는 아동양육비 이행제도에 의해서 지급되는 양육비를 지칭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구조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시각으로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 theory)을 들 수 있다. 가족체계이론은 가족구성원이 가족이라는 하나의 체계에 속해 있으며, 가족구성원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가족이라는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Cox and Paley, 1997: 246). 가족체계이론은 가족 내의 관계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등의 하위체계로 분류하면서, 가족구성원이 속해 있는 여러 관계망의 특성과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Cox and Paley, 1997; Widmer and Kellerhals, 2006).

가족체계이론과 관련해서, 가족구조와 자녀와 살지 않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간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가족구조의 유형화를 통해, 가족구조의 전반적인 특성을 포착하고, 상이한 가족유형이 아버지의 자녀양육 형태와 아동발달 등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를 고찰하는 방식이다(Carlson, 2006; Hofferth, 2006; Hofferth and Anderson, 2003; Harris and Ryan, 2004). 다른 하나는 보다 분석적인 접근을 취하는데, 전체 가족구조의 하위체계를 이루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양자관계(dyadic relationship)와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첫 번째 형태의 연구는 주로 현재 자녀의 거주상태와 해당 자녀 부모의 결혼상태 등을 이용하여, 가족구조를 유형화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여러 가족구조 유형간에 차이가 나는지를 밝히는 접근을 취한다(Carlson, 2006; Hofferth, 2006; Hofferth and Anderson, 2003; Harris and Ryan, 2004). 이러한 접근은 가족구조의 총체적 효과를 밝히는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도 지닌다. 첫째, 가족유형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지만, 가족구조가 어떠한 인과기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주로 기술적인(descriptive) 연구로써, 가족구조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어떠한 요인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차이를 낳는지에 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가족구조 형태를 동시에 고려한 가족구조의 유형화는 드문 실정이다(Manning and Smock, 1999, 2000; Harris and Ryan, 2004). 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한 쪽의 가족구조를 중심으로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Manning and Smock (1999, 2000)은 아버지가 속한 가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가족구조를 유형화하고 있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해당자녀가 의붓아버지와 살고 있고, 의붓아버지의 존재가 친아버지의 경제적 지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영향은 분석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가족구조의 특성에 관한 자료는 주로 현재 거주하는 가구구성원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과거 출산경력에 의해, 현재 가구 이외에 다른 가구에 거주하는 자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예: Manning and Smock, 1999). 또한, 아버지가 여러 배우자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의 순위도 아버지의 자녀양육비 지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주

로 배우자의 숫자만을 고려했을 뿐, 해당 자녀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여러 배우자 중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한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예: Mannig, Steward and Smock, 2003).

두 번째 형태의 연구는 가족체계를 구성하는 하부체계와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를 분석하고 있다(Carlson and McLanahan, 2006; Orbuch and Thornton, 2000; Soboleski and King, 2005). 가족체계의 하부체계는 1) 부부관계, 2) 부모-자녀 관계, 3) 형제관계 등의 다양한 양자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가족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관계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개인적 속성을 분석하는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기여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양자적 관계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라는 부모-자녀 관계의 특수한 형태와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Carlson and McLanahan(2006)은 미혼출산한 부부간의 자녀양육을 위한 협력적인 관계구축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간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연구는 가족유형화 연구에 비해,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의 변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분석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별적 관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외생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점이다(예: Soboleski and King, 2005). 그러나, 개별 관계의 특성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배태되어 있는 전체 가족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Wellman and Berkovitz, 1988). 이러한 개별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은 전체 가족구조에서 아버지의 위치와 아버지가 받는 제약을 적절히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Widmer and Kellerhals, 2006; Cox and Paley, 1997; Wellman and Berkovitz, 1988).

둘째, 각 개별적 관계를 분리해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개별적 관계 간의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해당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간의 상호작용은 의붓아버지와 같은 다른 행위자의 행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붓아버지가 해당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친아버지가 해당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분석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행위자간의 상호의존적인 행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경향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속한 가족구조를 동시에 고찰하였다. 주로 아버지의 가족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아버지의 현재 가구구성, 과거의 혼인 및 자녀출산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세부적인 가족구성요소를 측정함으로써, 가족구조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요소가 자녀와 살지 않는 아버지의 비공식 양육비 제공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가족구조 상황을 다음과 같은 7가지 요소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1) 재혼(동거) 여부, (2) 해당 자녀의 출생시 자녀의 어머니와 혼인/동거했는지 여부, (3) 아버지의 자녀를

낳은 배우자 수, (4) 아버지의 배우자 중에서 해당 자녀 어머니의 순위, (5) 현재 아버지와 살고 있는 자신의 자녀가 아닌 아동, (6) 새로운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 (7) 해당자녀의 어머니, 아버지 가구 이외에 사는 아버지의 자녀 등이다. 이러한 가족구조 특성이 아버지의 비공식 양육비 지출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가족구조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결혼상태를 분석할 것이다.³⁾

1) 재혼/동거와 새로운 가족의 형성

아버지가 재혼/동거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경우, 새로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은 이전 가족에 있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비공식적 양육비를 제공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재혼/동거하는 아버지는 자신의 경제적, 감정적 자원의 투자대상을 이전의 가족으로부터 새로 구성된 현재의 가족으로 이전하도록 요구받는다(Manning and Smock, 1999, 2000). 따라서, 이전 가족에 속해 있는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자원이 감소하게 된다. 아버지의 새로운 가족의 형성은 자신과 함께 살지 않는 자녀와의 만남/연락빈도, 공식적 아동양육비 지급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Manning and Smock, 1999, 2000). 따라서, 재혼/동거하는 아버지의 비공식 양육비 수준은 재혼/동거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아버지가 제공하는 비공식 양육비보다 적을 것이다.

한편, 새로 결혼한 아버지와 새로 동거하는 아버지 간에도 자녀에 대한 비공식 양육비 제공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결혼과 동거는 두 명의 당사자가 한 가구 안에서 경제적 자원을 공유하고 분배할 것에 관한 합의를 맺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과 동거는 사회적 규범의 영향력, 장기적인 계약유지의 인센티브, 개인의 선호도의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보인다.

결혼은 동거에 비해서, 더 구속력이 있고 장기적인 계약형태이다. 또한 결혼은 동거에서는 얻을 수 없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결혼은 남편 또는 부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결혼을 선택한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증진시킨다(Pollak, 2000; Cherlin, 2000). 또한 결혼은 동거에 비해, 사회적 규범을 통해서 지지받으면서, 부부간에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다. 결혼한 부부는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함으로써,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계발하는 데, 동거하는 커플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Pollak, 1985; 2000). 반면에, 동거는 결혼에 비해 이러한 장점이 적다. 이혼하는 것에 비해, 동거생활을 청산하는 것은 개인의 평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적다고 할 수 있다(Cherlin, 2000). 또한 동거는 당사자로 구성된 가족 모두의 복리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에 더 초점을 맞춘다(Brown and Booth, 1996).

이러한 결혼과 동거의 상이한 특성은 이혼 후 비공식 양육비 지출수준과도 관련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재혼한 아버지는 새로 동거하는 아버지에 비해, 새로운 가족을 부양하는데, 더 많은 헌신과 강

3)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가족구조 특성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반면에, 어머니의 가족구조에 대한 분석이 결혼상태에 국한되는 이유는 분석자료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아버지 서베이 자료는 아버지 응답자의 가족구조에 대해 상세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해당 자녀 어머니의 가족구조에 대해서는 현재의 결혼상태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 서베이를 이용한 어머니 가족구조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한 동기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재혼한 아버지는 이전 가족의 자녀를 부양하는데 활용가능한 자원을 줄여서, 새로 형성된 가족에 경제적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혼한 아버지는 동거하는 아버지보다 이전 가족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비공식 양육비를 적게 제공할 것이다.

한편 결혼 또는 동거를 선택하는 아버지의 고유한 특성은 다른 방향으로 아버지의 비공식 양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보다 가족지향적(family-oriented) 아버지 또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아버지는 동거보다는 결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Duncan, et. al., 2004). 동거를 선택한 아버지에 비해, 결혼을 선택한 아버지는 이전 가족에서 태어난 자녀양육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비록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이 증가했지만, 결혼을 선택한 아버지의 가족지향적 특성으로 인해, 이전 가족에서 태어난 자신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출은 동거하는 아버지의 양육비 지출수준과 유사할 것이다. 결혼/동거여부와 관련된 이러한 두 경쟁가설은 결혼/동거의 순효과(net effect)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하거나 동거하는 아버지 간의 비공식 양육비 수준의 차이는 경험적 분석의 대상으로 남게 된다.

2) 여러 배우자와의 자녀출산 및 해당 자녀 어머니의 배우자 순위

여러 명의 배우자와 자녀를 가진 아버지는 다른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여러 명의 자녀들에 대해 관심과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경쟁적인 요구에 직면한다(Furstenberg, 1991; Furstenberg and King, 1999).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를 낳은 배우자 수가 많을수록, 특정 한 배우자의 자녀에게 제공되는 비공식 양육비는 적을 것이다. 여러 명의 배우자와의 출산(multi-partner fertility)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배우자의 수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Meyer, Cancian and Cook, 2005). 이는 가족구조의 특성과 아버지가 지출하는 자녀양육비 '총액'을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는, 한 배우자의 자녀에게 특정화된 아버지의 비공식 양육비 제공은 해당 자녀의 어머니의 배우자 순위와도 관련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배우자 순위와 비공식 양육비 지급수준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상반된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먼저 아버지는 첫 번째 배우자보다는 나중에 관계를 맺은 배우자의 자녀에게 더 많은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오래 전에 관계를 맺은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부터 새롭게 관계를 맺은 배우자의 자녀에게로 경제적 자원을 재할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Manning and Smock, 1999; Manning et. al., 2003). 또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혼 후 부부관계가 약화됨으로써, 첫 번째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비공식 양육비 제공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Seltzer, 1991; Seltzer and Bianchi, 1988).

반면에, 아버지는 첫 번째 배우자의 자녀에게 더 많은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아버지는 첫 번째 배우자의 자녀, 특히 첫 번째 자녀에 대해 더 많은 애착을 가지며,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나중에 태어난 자녀에 비해서, 첫 번째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양육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이는 제공되는 비공식 양육비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는 나중에 관계맺은 배우자의 자녀보다는 첫 번째 배우자의 자녀에게 더 많은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할 것

이다.

3) 아버지 가구 내/외에서 생활하는 자녀의 구성

재혼한 아버지가 경제적, 정서적 자원을 이전 가족에서 현재 가족으로 재할당하는 정도는 현재 새롭게 구성된 가족구성원, 특히 아동의 구성과도 관련이 있다. 아버지 가구내의 의붓자녀 등 자신의 자녀가 아닌 아동의 존재는 해당 자녀에 대한 비공식 양육비 제공수준과 부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다. 아버지 가구에서 생활하는 자신의 자녀가 아닌 아동의 존재는 현재 가족에 대한 양육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현재 가족의 부양에 집중함으로써, 이전 가정에서 태어난 해당 자녀에 대한 비공식 양육비 지출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Furstenberg and King, 1999; Manning, Stewart, and Smock, 2003).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새로운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키우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새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이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비공식 양육비를 적게 제공할 것이다(Nepomnyaschy and Garfinkel, 2007; Manning and Smock, 1999, 2000). 이는 아버지가 새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가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를 방문하는 빈도가 적다는 연구결과와도 관련이 있다(Manning and Smock, 1999).

아버지와 관련된 배우자가 여럿인 경우, 해당 자녀 이외의 또 다른 배우자 가구에서 생활하는 자녀가 존재한다. 선행연구는 이러한 또 다른 자녀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예: Manning and Smock, 1999). 다른 곳에 거주하는 또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더 적은 비공식 양육비를 해당 자녀에게 제공할 것이다. 공식적, 비공식적 양육비 제공을 통해서, 경제적 자원을 다른 자녀에게도 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다(Manning, Stewart, and Smock, 2003).

4) 제도적 맥락: 위스컨신 주의 아동양육비 이행제도와 CSDE 실험효과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의 비공식 양육비 지급결정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속해있는 미국 위스컨신 주의 아동양육비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1) 아동양육비 이행제도, 2) 위스컨신 주 빈곤층 부모를 대상으로 수행된 아동양육비 이행명령 시범사업(CSDE)은 아버지가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하는 의사결정과 관련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양육비 이행제도의 영향은 이행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공식적 아동양육비와 비공식적 아동양육비 간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인지, 아니면 대체적인지 하는 점과 관련이 있다. 공식적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소득과 관련해서, 공식적 아동양육비 제공과 비공식적 아동양육비 제공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밝히고 있다(Seltzer and Schaeffer, 2001). 공식적 아동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에 비해, 공식적 양육비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더 빈번하게 방문하는 등(Peters and Argys, 2004), 자녀양육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비공식적 아동양육비도 더 많이 제공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Nepomnyaschy and Garfinkel(2007)은 공식적인 아동양육비 이행제도의 강화로 인해서, 아버지가 공식적인 아동양육비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비공식 양육비는 적게 지출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강화된 아동양육비 이행제도로 인해, 아버지는 공식적 아동양육비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 아동양육비 이행명령을 통해 부과된 아동양육비 금액은 이후에 비공식적 형태로 제공될 아동양육비의 수준에 제한을 가한다. 공식적 아동양육비 지출 후에 남은 소득 중에서 일부를 비공식 아동양육비 지출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 아동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에게 비해, 더 적은 수준의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방법을 서술한 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위스컨신 주 TANF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식적 아동양육비를 수급할 자격이 있는 빈곤층 여성을 배우자로 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이다. 1997년에 위스컨신 주에서는 아동양육 이행 시범사업(CSDE)을 통해, 빈곤층 부모를 대상으로 새로운 아동양육비 명령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아동양육비 이행제도는 아동양육권자의 복지프로그램 참여상태에 따라, 이원적인 제도로 운영되어 왔다(Garfinkel et. al., 1998). 아동양육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부모가 각종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제공하는 아동양육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반면에, 복지급여를 받는 빈곤층 부모의 경우에는, 제공된 아동양육비의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빈곤층 부모에게 지급된 각종 복지급여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귀속되었다.⁴⁾

위스컨신주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은 1) 제공된 아동양육비 전액을 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에게도 지급하고(full pass-through), 2) 제공된 아동양육비 전액은 소득산정에서 공제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평가를 위해, 빈곤층 부모를 무작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배정하였다. 실험집단에 속한 빈곤층 부모에게는 변화된 정책(아동양육비 전액지급, 소득산정에서 아동양육비 수입공제)을 시행하고, 통제집단에 속한 부모는 기존의 아동양육비 정책을 그대로 집행하여 시범사업의 효과를 밝히고 있다(Meyer and Cancian, 2001). 예상한 대로, 실험집단에 속한 어머니가 통제집단에 속한 어머니에 비해서, 더 많은 공식적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았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 중에서, 아동양육비를 제공한 비율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더 높았다(Meyer and Cancian, 2001).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 아동양육비를 제공하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으로써, 1) 공식적 아

4) 이러한 이원적인 아동양육비 정책은 빈곤가족 부양에서 가족(부모)의 일차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미국 복지제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또한, 아동양육비 이행제도의 도입이 한부모 가족의 증가에 따른 복지비용 지출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관련이 있다(Garfinkel et.al., 1998). 빈곤층 부모의 경우, 연방, 주정부가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부모(주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여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간주한다. 빈곤층 아동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제공된 복지급여를 아버지에게 구상한다는 차원에서, 아버지가 제공한 아동양육비의 일부만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하고, 나머지는 지출된 복지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에게로 귀속시킨다(Garfinkel et. al., 1998).

동양육비 이행명령 유무, 2) 공식적 아동양육비 제공수준, 3) 아동양육비 이행 시범사업이 아버지의 비공식 양육비 제공수준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4.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위스컨신 복지프로그램 서베이(Survey of Wisconsin Works Families)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서베이 표본은 1997년 9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위스컨신주 복지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출하였다(Caspar et.al., 2001; Seltzer and Schaeffer, 2001). 또한 1) 위스컨신주 실업보험 행정자료, 2) 공식적 아동양육비 행정자료(Kids Information Data System)도 활용하였다. 실업보험자료를 통해 아버지의 고용상태와 근로소득에 관한 정보를, 아동양육비 행정자료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가 아동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는지 여부와 공식적인 아동양육비 지급액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자녀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1999년에 수행된 1차 서베이와 2000년에 수행된 2차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두 차례의 조사에서는 각각 1998년과 1999년의 가족상황,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을 조사하였다. 아버지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은 어머니 서베이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먼저 복지프로그램 행정자료를 표집틀로 이용하여, 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 중에서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해당 어머니(focal mother)의 자녀 중 한 자녀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해당 자녀(focal child)의 아버지(focal father)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총 1,936명의 아버지 표본 중에서, 643명의 아버지가 1차 서베이에 응답하여, 33% 정도의 응답률을 보였다.⁵⁾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noncustodial fathers)와 해당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custodial mothers)를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377명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⁶⁾ 이 연구에서는 분석표본에 포함된 377명의 아버지 중에서, 2000년에 수행된 2차 아버지 서베이에 다시 응답한 210명의 아버지에 관한 자료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

5) 이와 같이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Zilliak and Kreckler, 2001). 부실한 인터뷰를 포함해서 인터뷰를 하지 못한 아버지는 1,293명인데, 해당 자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47%). 연락을 안돼서 인터뷰를 하지 못한 경우가 약 12%, 연락했으나, 인터뷰를 거절한 경우가 19%, 아버지가 감옥에 있어서 인터뷰를 하지 못한 경우가 약 11%에 달했다.

6) 643명의 아버지 중에서, 해당 자녀가 1998년에 적어도 6개월 이상 아버지와 살고 있는 경우(n=97), 2) 아버지가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n=64), 3) 아버지가 해당 자녀의 어머니와 결혼하거나, 동거하는 경우(n=26), 4) 어머니 또는 아버지 가구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자녀가 최소한 6개월 이상 살았던 경우(n=35), 5) 어머니가 죽거나 감옥에 있는 경우(n=8)는 분석사례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비공식 양육비에 관한 정확한 지급액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n=36)도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인 분석표본에는 377명이 포함되었다.

수 중의 하나인 해당 자녀 어머니의 배우자 순위를 측정하는 변수는 1차 서베이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고, 2차 서베이에서만 구성할 수 있었다.⁷⁾ 따라서, 1차 서베이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에서는 배우자 순위변수를 제외하였으며, 배우자 순위효과는 2차 서베이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후 분석에서는 1차 서베이 자료에서 조사설계와 무응답 사례를 조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측정

아버지 서베이에서는 아버지가 특정 한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와 그 자녀의 형제/자매에게 제공한 1) 비공식 양육비 제공형태, 2) 연간 달러로 환산한 총금액을 조사하였다. 비공식 양육비 제공형태는 다음 8가지 항목에 속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1) 기저귀, 의류, 신발, 2) 용돈, 3) 생일 또는 명절선물, 4) 식료품, 5) 교육비, 6) 의료비 (의료보험 포함), 7) 집세, 주택할부금, 8) 기타 등이 그것이다. 아버지가 제공한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양육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연간 얼마인지를 조사하였다. 연간 제공금액은 서열변수로 “\$100 미만”부터 “\$1,500 이상”까지 6개의 구간으로 측정하였다.

아버지의 조사당시 결혼상태는 1) 다른 여성과 결혼, 2) 다른 여성과 동거, 3) 독신으로 측정하였으며, 어머니의 결혼상태는 1) 다른 남성과 결혼, 2) 다른 남성과 동거, 3) 독신, 4) 결혼상태 모름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해당 자녀의 출생 당시의 결혼 상태는 1) 해당 자녀 어머니와 결혼, 2) 동거, 3) 비거주로 측정하였다.

아버지의 가족구조와 관련해서, 1) 아버지 가구에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성인의 거주여부, 2) 아버지의 자녀를 낳은 배우자 수, 3) 여러 배우자 중에서, 해당자녀 어머니의 배우자 순위, 4) 해당 자녀의 형제/자매 수, 5) 아버지의 자녀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 가구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는 자녀 수, 6) 현재 새로운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 유무, 7) 아버지 가구에서 거주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아동(예:의붓자녀)의 수 등을 조사하였다. 거주여부는 6개월을 기준으로, 배우자 순위는 아버지 자녀의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출생순위에 따라서 결정했다. 아버지가 한 배우자 사이에 여러 명의 자녀를 둔 경우, 장남/장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순위를 정하였다.

아버지가 해당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공식적 아동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는지 여부, 공식적 아동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공식적 아동양육비 지출수준을 연간 총금액으로 조사하였다. 아버지가 아동양육비 이행 시범사업(CSDE)에서 실험집단/통제집단에 속하는지도 조사하였다. 아버지와 해당 자녀의 인구학적 특성도 조사하여, 다변량분석에서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아버지의 연령, 인종, 교육수준, 1998년에 해당자녀 어머니와 거주한 기간(월), 해당자녀 어머니와 헤어진 이후 경과시간(년), 1998년의 근로소득을 조사했으며, 해당 자녀의 연령도 조사했다.

7) 아버지의 배우자가 여러 명일 경우, 자녀의 생년월일 순서로 배우자 순위를 결정했다. 그런데, 1차 서베이에서는 아버지 자녀의 생년월일이 조사되지 않아서, 배우자 순위를 파악할 수 없었다. 반면에 2차 서베이에서는 자녀의 생년월일을 조사함으로써, 어머니의 배우자 순위는 2차 서베이 자료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다.

3) 분석방법

가족구조와 아버지가 제공하는 비공식 양육비 수준 간의 관계는 주로 서열프로빗(ordered probit) 회귀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아동양육비 지급수준이 6개의 구간(예: \$100 미만, \$100-250)으로 이루어진 서열변수로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Tobit 모델을 통해서, 가족구조와 1) 비공식 양육비 제공확률, 2)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한 경우, 제공수준 간의 관계를 동시에 고찰하였다. Tobit 분석을 위해서, 왼쪽 절단값(\$0)과 오른쪽 절단값(\$1,500 이상)을 제외한 5개의 구간의 경우, 중간값을 이용하여, 50(\$100 미만), 175(\$100~\$250), 375(\$250~\$500), 750(\$500~\$1,000), 1,250(\$1,000~\$1,500) 등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⁸⁾

가족구조와 비공식 양육비 제공수준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회귀분석에서는 2개의 모델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모델(모델1)에서는 자녀구성과 관련된 변수를 제외한, 가족구조 변수를 주요 독립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또한 해당 자녀의 부모간 관계적 속성으로 1) 1998년에 부모가 같이 산 기간, 2) 헤어진 이후 경과시간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도적 요인으로 1) 공식적 아동양육비 이행명령 유무, 2)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 공식적 아동양육비 제공금액, 3) CSDE 실험집단 소속여부 등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아버지의 연령, 인종, 교육수준, 근로소득과 해당 자녀의 연령 등 인구학적 변수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두 번째 모델(모델2)은 아버지의 자녀구성과 관련된 변수를 모델1에 사용한 변수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자녀구성과 관련해서, 1) 해당 자녀의 형제/자매 유무, 2) 다른 가구에서 살고 있는 자녀 유무, 3) 현재 새로운 배우자/파트너 사이에 출생한 자녀 유무, 4) 아버지와 함께 사는 친자가 아닌 미성년자 유무 등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1차 서베이에 포함된 377명의 아버지 중에서, 2차 서베이에 다시 응답한 210명의 아버지에 관한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해당자녀 어머니의 배우자 순위와 비공식 양육비 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차 서베이 분석에서는 해당 어머니의 배우자 순위변수를 추가로 분석에 투입했으며, 동일한 분석모델(모델1, 모델2)을 사용하였다.

8) Tobit 모델을 이용한 분석에서, 가족구조, 제도적 요인, 인구학적 변수의 추정값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도는 서열프로빗 모델을 이용한 결과와 거의 동일하였다. 지면제약에 의해서, 본문에서는 서열프로빗 분석결과만을 제시하였다.

5.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

〈표 1〉은 해당 자녀와 살지 않는 아버지가 1998년에 제공한 비공식 양육비 지원수준과 유형을 보여 준다. 84%의 아버지가 해당 자녀와 해당 자녀의 형제/자매에게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했으며, 40%의 아버지는 \$500 이상의 비공식 양육비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비공식 양육비 제공수준은 88%의 아버지가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했다는 Seltzer and Schaeffer(2001)의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표 1〉 비공식 양육비 제공 수준, 제공 유형 (n=377)

	N	% ¹
(1) 비공식 양육비 제공수준		
제공하지 않음	59	15.7
\$100 미만	19	4.7
\$100 ~ \$250	60	13.4
\$250 ~ \$500	89	27.0
\$500 ~ \$1,000	82	19.9
\$1,000 ~ \$1,500	36	11.9
\$1,500 이상	32	7.5
(2) 비공식 양육비 유형		
· 기저귀, 의류, 신발	282	76.4
· 용돈	194	62.5 (71.2) ²
· 선물	301	77.0
· 음식, 식료품 구입	185	47.1
· 교육비	91	22.0
· 의료비	104	26.8
· 집세, 주택구입 할부금	53	9.5
· 기타 현금지급	178	40.7
· 비공식 양육비 제공	318	84.4

¹ 표본추출, 무응답을 조정한 가중치를 적용한 비율임.

² 괄호 안의 비율은 용돈 제공과 관련하여, 장남/장녀가 최소한 3살 이상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비공식 양육비 지원유형의 분포를 보면, 약 70% 이상의 아버지가 1) 기저귀, 의류, 신발, 2) 용돈, 3) 선물 등을 제공하였다. 반면에, 1) 교육비, 2) 의료비, 3) 집세 또는 주택할부금 등을 제공한 아버지는 30% 미만이었다. 아버지는 의류, 신발, 선물 등 자신이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현시적인 성격의 현물제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England and Folbre, 2002; Nelson et. al., 2002; Maldonado, 2006). 해당 자녀 가구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식료품, 주택비용, 의료비보다는,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를 보여주는데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표 2〉 가족구조의 특성

		N	% ¹
(1) 아버지의 결혼상태	다른 여성과 결혼	53	14.3
	다른 여성과 동거	100	27.2
	독신	224	58.5
(2) 어머니의 결혼상태	다른 남성과 결혼	43	10.2
	다른 남성과 동거	93	27.2
	독신	135	28.2
	모름	106	34.5
(3) 해당자녀 출생당시, 결혼상태	해당자녀 어머니와 결혼	58	9.6
	해당자녀 어머니와 동거	102	31.6
	함께 살지 않았음	217	58.8
(4) 아버지의 자녀를 낳은 배우자/파트너 수	1명	187	49.4
	2명	143	37.6
	3명 이상	49	13.0
(5) 해당자녀 어머니의 배우자 순위 ²	1번째 배우자	162	74.3
	2번째 배우자	38	21.1
	3번째 이상 배우자	8	2.8
	무응답	2	1.8
(6) 해당자녀의 형제/자매수	없음	291	83.1
	1명	60	11.7
	2명 이상	26	5.2
(7) 다른 곳에 거주하는 자녀 수	없음	239	63.0
	1명	70	20.2
	2명	41	10.4
	3명 이상	27	6.5
(8) 현재 새로운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	있음	49	16.9
	없음	325	82.0
	무응답	3	1.1
(9) 아버지 가구에 사는 자신의 자녀가 아닌 아동	없음	258	61.7
	1명	38	14.6
	2명	30	6.0
	3명 이상	25	9.1
	무응답	26	8.6

¹표본추출, 무응답을 조정한 가중치를 적용한 비율임.

²1차 서베이에 응답한 아버지(n=337) 중에서, 2차 서베이에 응답한 아버지(n=210)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이러한 상징적, 현시적 성격의 현물제공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금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제공된 현금이 적절하게 자신의 자녀를 위해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Weiss and Willis, 1985; Teachman, 1991; Argys and Peters, 2003). 특히, 어머니가 재혼해서 다른 남성과 살면서, 다른 남성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아버지는 어머니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성원이 혜택을 누리는 공공재 성격의 양육비 제공(예: 식료품, 주택비용)보다는, 자신의 자녀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적재 성격(예: 의류, 선물)의 현물 제공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자녀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해당자녀 어머니의 현재 배우자(동거자)가 경제적 필요충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도 상징적 형태의 현물급여를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표 2>는 해당 자녀 부모의 결혼상태를 비롯해서, 다양한 가족구조 특성을 보여준다. 다른 여성과 결혼한 아버지는 14%였으며,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아버지는 27%였다. 해당 자녀 어머니 중에서 37%는 다른 남성과 결혼하거나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신인 어머니는 2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자녀가 출생했을 당시에, 결혼 또는 동거형태로 해당 자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응답한 아버지는 약 41%였다.

두 명의 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가진 아버지는 38%였으며, 세 명 이상의 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가진 아버지도 13%에 달했다.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아버지(n=230) 중에서는, 약 80%의 아버지가 다른 배우자와 아이를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표에 제시되지 않음). 복지급여를 받는 빈곤층 어머니를 배우자로 가진 아버지 집단에서 여러 배우자를 가진 경우는 절반 정도에 달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아버지 집단에서 여러 배우자를 가진 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인다. 배우자 순위는 1차 서베이에서 조사된 아버지 중에서 2차 서베이에도 응답한 아버지(n=210)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해당 자녀의 어머니가 첫 번째 배우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74%였으며, 이 수치는 1명의 배우자만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 수치이다. 최소한 2명 이상의 배우자를 가진 경우(n=192), 해당 자녀의 어머니가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에 관계된 배우자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43%였다(표에 제시되지 않음).

자녀의 분포를 보면, 해당 자녀의 형제/자매가 없다고 응답한 아버지는 83%였다. 아버지 가구 및 해당자녀 어머니 가구 이외의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또 다른 자녀(해당 자녀의 이복형제/자매)가 있다고 응답한 아버지는 약 37%였다. 아버지 가구에 살고 있는 아동과 관련해서, 현재 새로운 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가진 비율은 17%였다. 약 30%의 아버지는 외붓자녀, 친척 또는 친구의 자녀 등 친자가 아닌 아동과 살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 3>은 공식적 아동양육비 이행명령을 비롯한 제도적 특성과 아버지와 해당 자녀의 인구학적 특성의 분포를 보여준다. 81%의 아버지는 공식적 아동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으며, 62%의 아버지는 공식적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였다. 연간 \$1,000 이상 지급한 아버지는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버지는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에서 통제집단에 더 많이 배정되었다. 30세 이하인 아버지는 44%였으며, 해당 자녀의 연령이 5세 이하인 경우는 약 30%였다. 70% 이상의 아버지가 흑인이었으며, 약 70%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

근로소득이 없었다고 응답한 아버지는 46%에 달했으며, 연간 \$15,00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는 약 15%였다. 빈곤층 해당자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이들을 배우자로 둔 아버지도 대부분 저

소득층임을 알 수 있다. 부모를 포함한 친척 또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는 41%였다. 거의 대부분의 아버지는 해당 자녀의 어머니와 1998년에 함께 산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의 아버지는 별거,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의 어머니와 관계가 단절된지 6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고 응답했다.

〈표 3〉 제도적, 인구학적 특성

		N	% ¹
(1) 공식적 양육비 이행명령	있음	327	80.9
	없음	44	17.2
	친자확인이 안됨	6	1.9
(2) 공식적 양육비 지급액	친자확인이 안됨	6	1.9
	지급하지 않음	98	36.6
	\$1~\$999	111	32.9
	\$1,000~\$1,999	53	11.9
	\$2,000~\$2,999	43	8.3
	\$3,000 이상	66	8.6
(3) 아동양육비 시범사업(CSDE)	통계 집단	184	55.9
	실험 집단	193	44.1
(4) 아버지의 연령	18~25	72	13.7
	26~30	109	30.7
	31~40	131	38.4
	41세 이상	65	17.2
(5) 해당자녀의 연령	0~2	41	5.6
	3~5	100	24.0
	6~12	162	45.2
	13~17	74	25.2
(6) 아버지의 인종	백인	129	19.8
	흑인	203	73.3
	기타(히스패닉, 아시안)	45	6.9
(7)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85	30.1
	고졸	206	50.0
	고졸이상	84	19.5
	무응답	2	0.3
(8) 아버지의 근로소득	없음	131	46.0
	\$1~\$5,000	57	19.9
	\$5,000~\$15,000	89	17.5
	\$15,000~\$25,000	54	10.0
	\$25,000 이상	39	4.7
	무응답	7	1.9
(9) 아버지 가구에 사는 배우자/파트너 이외의 성인	있음	146	40.7
	없음	206	50.9
	무응답	25	8.4
(10) 해당 자녀 어머니와 같이 산 기간	없음	355	94.7
	1~5 개월	22	5.4
(11) 해당 자녀 어머니와 헤어진 이후 경과시간	2년 미만	90	17.9
	3~5년	110	24.6
	6~10년	104	32.7
	11년 이상	60	20.5
	무응답	13	4.3

¹ 표본추출, 무응답을 조정한 가중치를 적용한 비율임.

2) 다변량 분석

가족구조와 아버지가 제공하는 비공식 양육비 수준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서열 프로빗 (ordered probit)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는 1차 아버지 서베이 자료를 이용한 서열 프로빗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표 4> 가족구조와 비공식양육비 지급수준: 서열 프로빗 분석(n=377)

변수	모델1		모델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1	-3.1340	0.4069 **	-3.3346	0.4123 **	
상수2	0.6634	0.0902 **	0.6823	0.0926 **	
상수3	1.3625	0.1082 **	1.4052	0.1112 **	
상수4	2.1960	0.1213 **	2.2617	0.1247 **	
상수5	2.6861	0.1294 **	2.7669	0.1331 **	
상수6	2.8954	0.1336 **	2.9857	0.1376 **	
해당자녀 어머니의 결혼상태 (독신)	다른 남성과 결혼	-0.3850	0.2190 †	-0.3263	0.2222
	다른 남성과 동거	-0.3970	0.1591 *	-0.4047	0.1607 *
	모름	-0.6020	0.1537 **	-0.5319	0.1549 **
해당자녀 아버지의 결혼상태 (독신)	다른 여성과 결혼	-0.0323	0.2018	-0.2393	0.2279
	다른 여성과 동거	-0.2841	0.1627 †	-0.3999	0.1728 *
해당자녀 출생당시 결혼상태 (함께 거주하지 않음)	결혼	0.5236	0.2200 *	0.4921	0.2278 *
	동거	0.3330	0.1430 *	0.3201	0.1450 *
함께 생활하는 성인 (없음)	있음	-0.0201	0.1467	-0.0685	0.1529
배우자/파트너 수 (1명)	2명	0.1951	0.1322	0.5772	0.2794 *
	3명 이상	-0.3057	0.2020	0.2021	0.4144
해당자녀의 형제/자매 (없음)	있음			0.3485	0.1591 *
다른 곳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자녀수 (없음)	있음			-0.4933	0.2834 †
현재 새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 (없음)	있음			0.0923	0.2828
자신의 자녀가 아닌 아동/청소년 수 (없음)	있음			0.2271	0.1427

† p < 0.1, * p < 0.05, ** p < 0.01

해당 자녀 어머니가 독신인 경우에 비해, 다른 남성과 결혼하거나 동거하는 경우, 아버지는 더 적은

수준의 비공식 양육비를 해당 자녀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다른 남성과 결혼한 어머니와 동거하는 어머니 간에는 비공식 양육비 지급수준에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의 결혼상태도 비공식 양육비 수준과 관련이 있는데,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아버지는 독신인 아버지에 비해, 더 적은 수준의 비공식 양육비를 해당 자녀에게 제공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해당 자녀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동거가 이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양육참여를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Seltzer and Bianchi, 1988; Seltzer, 1991).

〈표 4〉 가족구조와 비공식양육비 지급수준: 서열 프로빗 분석(n=377) (계속)

변수		모델 1		모델 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공식적 양육비 이행명령 (없음)	있음	-0.0877	0.2003	-0.1020	0.2081		
	친자확인이 안됨	0.3601	2.8960	0.5683	2.9018		
CSDE 시범사업(통제집단)	실험집단	0.3520	0.1190	**	0.3239	0.1200	**
연간 공식적 양육비 지급액 (없음)	\$1-999	0.4441	0.1770	*	0.5108	0.1830	**
	\$1,000-1,999	0.2329	0.2276		0.3498	0.2363	
	\$2,000-2,999	0.4398	0.2584	†	0.4728	0.2671	†
	\$3,000 이상	0.7150	0.2768	**	0.6431	0.2825	*
해당자녀 어머니와 헤어진 이후 경과시간 (2년미만)	3-5년	0.0034	0.1949		-0.0365	0.1987	
	6-10년	-0.0952	0.2252		-0.1157	0.2292	
	11년이상	0.0108	0.2582		0.0036	0.2610	
해당자녀 어머니와 함께 산 기간 (없음)	1-5개월	0.6205	0.2761	*	0.4885	0.2879	†
아버지의 연령 (41세 이상)	18-25	0.3473	0.2430		0.4539	0.2531	†
	26-30	0.2854	0.1966		0.2273	0.1985	
	31-40	0.4422	0.1740	*	0.4257	0.1757	*
아버지의 인종 (백인)	흑인	0.7702	0.1755	**	0.7817	0.1771	**
	기타	0.3332	0.2549		0.3546	0.2579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졸 미만)	고졸	0.3715	0.1360	**	0.3496	0.1376	*
	고졸 이상	0.7930	0.1723	**	0.7842	0.1743	**
해당자녀의 연령 (13-18)	0~2	0.1589	0.3646		0.2264	0.3693	
	3~5	-0.0503	0.2535		-0.0050	0.2563	
	6~12	0.2182	0.1947		0.2721	0.1993	
아버지의 연간 근로소득 (없음)	\$1-\$5,000	0.0244	0.1578		0.0687	0.1642	
	\$5,000-\$15,000	-0.3206	0.1677	*	-0.2997	0.1733	†
	\$15,000-\$25,000	-0.2000	0.2207		-0.0523	0.2270	
	\$25,000이상	0.1894	0.2915		0.3034	0.2951	
	파악불가	0.2711	2.8620		0.0858	2.8677	
Log Likelihood		-655.5		-643.0			

† p < 0.1, * p < 0.05, ** p < 0.01

해당 자녀의 출생 당시 결혼상태와 관련하여, 해당 자녀의 어머니와 결혼하거나 동거했던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에 비해서 더 많은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하였다. 약 절반 이상의 아버지가 해당 자녀의 어머니와 헤어진 이후, 6년 이상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당시의 결혼상태는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시사한다. 아버지의 현재 거주상태와 관련하여, 아버지가 자신의 부모를 비롯한 친척, 또는 친구 등 다른 성인과 함께 사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에는 비공식 양육비 지급수준에 차이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배우자 수와 비공식 양육비 수준 간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수와 비공식 양육비 제공수준 간의 부적인 관계를 상정하는 가정을 지지하지 않는다. 특이한 점은 자녀구성 변수를 통제한 후(모델2), 두 명의 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가진 아버지는 한 명의 배우자(해당 자녀의 어머니) 사이에 자녀를 가진 아버지에 비해서, 더 많은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한다는 점이다(모델2).

이러한 차이는 두 명의 배우자를 가진 아버지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두 명의 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가진 아버지는 한 명의 배우자를 가진 아버지에 비해서, 더 가족지향적이거나, 자녀양육에 깊은 관심을 가진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아버지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이 해당 자녀에 대한 비공식 양육비 제공수준과 관련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모델2는 자녀의 구성이 비공식 양육비 제공수준과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해당 자녀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비해, 해당 자녀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아버지는 더 많은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한다. 해당 자녀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더 많은 양육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른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다른 가구에서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아버지는 더 적은 수준의 비공식 양육비를 해당 자녀에게 제공하였다. 다른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의 존재는 해당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배분을 제약함으로써, 해당 자녀에게 더 적은 수준의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하게 한다.

현재 새로운 배우자와 살면서 자녀를 낳은 경우는 자녀를 낳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비공식 양육비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다른 여성과 결혼 또는 동거하여 새로 자녀를 가진 아버지의 고유한 특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족지향적인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에 비해서, 새로운 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 새로운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전 배우자의 자녀에게 제공되는 비공식 양육비 제공을 감소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아버지 가구에 살고 있는 의붓자녀 등 자신의 자녀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존재유무도 비공식 양육비 수준과 관련이 없었다.

제도적 특성과 관련해서, 공식적 아동양육비 이행명령 유무는 해당자녀에게 제공되는 비공식 양육비 수준과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공식적 아동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아버지의 경우, 높은 수준의 공식적 양육비를 지급한 아버지는 비공식 양육비도 더 많이 제공하였다.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의 실험집단 효과와 관련하여, 실험집단에 속한 아버지는 통제집단에 속한 아버지에 비해서, 더 많은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하였다. 실험집단에 속한 아버지는 더 많은 공식적 양육비를 제공하며, 자신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개입의 증대가 비공식적 양육비 지급을 수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실험집단에 속한 아버지와 통제집단에 속한 아버지 간에 자

녀양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실험집단에 속한 아버지가 통제집단에 속한 아버지에 비해서, 해당자녀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자녀양육에 참여하였다. 자녀의 삶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입비율,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비율, 해당자녀 어머니와 자녀에 대해 빈번하게 대화를 나누는 비율, 공식적 아동양육비 지급의무를 갖는 비율 등에서, 실험집단에 속한 아버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이 단순히 공식적 아동양육비 지급의무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관심과 개입, 자녀양육을 위한 이전 배우자와의 협력적인 관계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해당자녀 어머니와 헤어진 이후 경과한 시간은 비공식 양육비 수준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살지 않는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이혼 등으로 헤어진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Seltzer, 1991; Seltzer and Bianchi, 1988; Nepomnyaschy and Garfinkel, 2007).⁹⁾ 1998년에 해당자녀 어머니와 1~5개월 동안 함께 살았던 아버지는 같이 산 적이 없는 아버지에 비해, 더 많은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하였다.

30대 아버지가 40대 이상인 아버지보다 더 많은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하였다. 자녀구성 변수를 통제 후, 18~25세의 아버지도 40대 이상의 아버지보다 더 많은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하였다(모델2). 흑인 아버지는 백인 아버지보다 더 많은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하였다. 공식적 양육비 제공과 관련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식적 양육비 제공확률과 제공수준은 백인에 비해 흑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eyer, Cancian, and Cook, 2005). 흑인 아버지는 낮은 수준의 공식적 양육비 제공을 보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아버지보다 더 많은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하였다. 해당 자녀의 연령은 비공식 양육비 제공수준과 관련이 없었다. 아버지의 근로소득과 비공식 양육비 제공수준 간에는 일관된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공식적 양육비 이행명령과 공식적 양육비 지급수준이 분석모델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비공식 양육비 지급수준 간의 관계를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¹⁰⁾

〈표 5〉는 1차 서베이에와 2차 서베이에 모두 응답한 아버지(n=210)를 대상으로, 해당 자녀 어머니가 차지하는 배우자 순서와 비공식 양육비 제공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두 명 이상의 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가진 아버지 중에서, 아버지는 두 번째 배우자에 비해, 첫 번째 배우자에게 더 많은 비

9) 해당자녀 어머니와 헤어진 이후 경과시간은 아버지의 연령, 해당 자녀의 연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해당자녀의 연령변수를 분석모델에서 제외한 후, 경과시간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관계종료 이후 경과시간은 해당 자녀에 대한 비공식 양육비 제공수준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높은 근로소득을 가진 아버지일수록 공식적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을 확률과 공식적 양육비 지급수준이 높다(Garfinkel et. al., 1998). 따라서, 근로소득과 비공식 양육비 수준 간의 관계는 두 변수(공식적 양육비 이행명령, 공식적 양육비 지급수준)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기 때문에, 〈표 4〉에 나타난 근로소득의 회귀계수는 근로소득의 총효과가 아닌, 직접효과만을 나타낸다. 두 매개변수를 제외한 별도의 분석에서는,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제공하는 비공식 양육비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양육비를 제공하였다 (모델1). 그러나, 해당 자녀 어머니가 첫 번째 배우자인 경우와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에 맺어진 배우자인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여러 배우자 중에서, 해당 자녀의 어머니가 차지하는 위치가 비공식 양육비 수준을 예측하는데 유용함을 시사한다.

<표 5> 배우자 순위와 비공식양육비 지급수준: 서열 프로빗 분석 (n=210)¹

변수	모델 1		모델 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배우자/파트너수 (1명)	2명 3명 이상	0.3783 0.0940	0.2330 0.4096	0.6080 0.2150	0.4605 0.7509
배우자 순위 (1번째)	2번째 3번째 이상	-0.6952 -0.2733	0.2691 ** 0.547	-0.4737 -0.1323	0.3032 0.5699
Log Likelihood		-328.682		-325.208	

† p < 0.1, * p < 0.05, ** p < 0.01

¹ 1차 서베이 회귀분석에 사용한 동일한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임. 지면관계상, 배우자 수와 배우자 순위변수의 회귀계수, 표준오차, 통계적 유의도를 제시함.

첫 번째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과 아버지 역할수행은 아버지가 여러 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가진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몇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는데, 첫째, 아버지는 자신의 첫 번째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더 많은 애착과 관심을 보이고,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둘째, 위스킨슨 주의 공식적 아동양육비 이행제도의 특성이 첫 번째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공식적 아동양육비는 첫 번째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더 많이 지급하도록 산정된다(Meyer, Cancian and Cook, 2005; Cancian and Meyer, 2006).¹¹⁾ 공식적 양육비 지급수준과 자녀와의 만남 등 양육참여 간의 정적인 관계(Seltzer, 1991)를 고려하면, 아버지는 첫 번째 배우자에게 더 많은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11) 공식적 아동양육비 이행명령은 자녀수를 고려하여,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소득의 일정비율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여러 명의 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가진 경우, 결과적으로 첫 번째 배우자의 자녀에게 가장 많이 아동양육비가 제공된다. 그 이유는 두 번째 배우자의 자녀에게는 첫 번째 배우자의 자녀에게 제공한 아동양육비를 차감한 후 남은 소득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아동양육비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세 명의 배우자와 각각 한 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 공식적 아동양육비 이행명령은 결과적으로 첫 번째 배우자에게 가장 많은 아동양육비를 제공하고, 세 번째 배우자에게 가장 적은 아동양육비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Meyer, Cancian and Cook, 2005; Cancian and Meyer, 2006).

6.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주로 아버지의 가족구조 특성과 아버지가 빈곤층 자녀에게 제공하는 비공식 양육비 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해당 자녀 부모의 결혼상태, 가구구성, 출산경력 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거주하는 가구의 범위를 넘어서, 여러 가구에 걸쳐 맺어진 결혼관계, 부모-자녀관계의 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아버지가 속한 가족구조가 비공식 양육비 제공을 제약하는지, 어머니의 가족구조가 비공식 양육비를 요구하는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비공식 양육비 제공수준은 아버지의 개인적, 경제적 특성 뿐만 아니라, 가족구조와 공식적 양육비 지급에 관한 제도적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혼/동거는 비공식 양육비 지출수준과 부적인 관련이 있었다. 해당 자녀의 출생 당시의 거주형태는 비공식 양육비 지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자녀를 낳은 배우자 수와 비공식 양육비 지출은 관련이 없었다. 두 명의 배우자를 가진 아버지는 첫 번째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더 많은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자녀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아버지는 더 많은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하였으며, 아버지가 다른 배우자 사이에 또 다른 자녀를 가진 경우, 적은 수준의 비공식 양육비를 지급하였다. 제도적 특성과 관련하여, 공식적 아동양육비를 많이 제공하는 아버지가 비공식적 아동양육비도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양육비 시범사업 실험 집단에 속한 아버지가 통제집단에 속한 아버지에 비해, 더 많은 비공식 양육비를 제공하였다.

가족구조는 결혼/동거, 출산, 이혼 및 재혼 등의 다양한 개인적 선택의 집합적 결과이지만, 일련의 선택의 결과로 자신이 속한 가족구조는 가족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녀의 부모가 속해 있는 다양한 가족구조의 특성을 포착함으로써, 자녀와 살지 않는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 아동양육비를 제공하는 아버지의 경우, 공식적 아동양육비와 비공식적 아동양육비 제공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아동양육정책 및 서비스와 관련된 시사점은 주로 미국의 공식적 아동양육비 이행제도와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아동양육비 이행제도의 도입 및 강화는 미혼모 출산 증가로 인해, 급증해 온 복지프로그램,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지원프로그램(AFDC) 지출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로 진행되어 왔다(Pirog and Ziol-Guest, 2006). 더 이상 납세자가 아니라, 해당 아동의 아버지가 빈곤아동의 양육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적 여건이 점차 복잡해져 왔다. 따라서, 변화하는 가족구조의 맥락에서, 지난 수십년간 미국에서 강화되어 온 아동양육비 이행정책을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Meyer, Cancian and Cook, 2005).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재혼해서 또 다른 자녀를 양육하는 등 복잡해지는 가족구조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의 양육비 제공에 중요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또한, 해당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재혼하여, 또 다른 자녀를 키우는 경우, 해당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신이 제공한 양육비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쓰일 가능성 때문에, 적정수준의 양육비 제공을 꺼리게 된다. 다양한 가족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양육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 또는 강제하는 것이 최근 미국의 아동양육비 이행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복잡해지는 가족구조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이행을 강조하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 양육비 제공은 일종의 가구 간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족구조의 변화는 이러한 재분배 과정에서 다양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Pirog and Zioli-Guest, 2006). 재혼한 후, 현재 배우자와 자녀에게 더욱 충실한 상황에서, 이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어떻게 균형있게 병행해 갈 수 있는가? 새로운 자녀의 양육책임을 지는 부모에게는 기존의 아동양육비 이행금액을 하향조정해 주어야 하는가? 현재 새배우자의 소득도 기존의 아동양육비 이행금액 산정에 고려해야 하는가? 양육하지 않는 자녀가 여러 가구에 사는 경우, 어떤 자녀가 아동양육비 산정에서 우선권을 갖는가? 이러한 다양한 쟁점이 정책결정자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Pirog and Zioli-Guest, 2006).

빈곤층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부모(주로 아버지)로부터 아동양육비를 징수하는 문제는 또 다른 쟁점 중의 하나다. 저소득층 아버지는 낮은 교육수준, 범 죄전력 등 취업에 불리한 속성을 갖고 있다(Sorensen and Zibman, 2001). 이들 저소득층 아버지의 경우, 양육비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수감되고, 수감된 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이 없어서 아동양육비 채무(child support arrears)가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양육비 제공 의사가 있더라도, 안정되고 괜찮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여 양육비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버지의 문제는 저소득층 노동시장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처럼 공식적 아동양육비와 비공식적 아동양육비 제공은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과 긴밀한 관련이 있으므로(Huang and Pouncy, 2005; Garfinkel, McLanahan, and Hanson, 1998), 저소득층 아버지의 고용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직업훈련 및 취업서비스가 필요하다(Huang and Pouncy, 2005). 미국에서는 직업이 없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 및 직업훈련 시범사업(예: Parents' Fair Share (PFS))을 시도해 왔다.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수감되는 것을 면하고, 참여기간 동안에는 아동양육비 이행명령으로 부과되는 이행금액을 감소시키는 등의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Pirog and Zioli-Guest, 2006).

서비스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녀 출생 당시 아버지의 존재가 배우자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결혼 및 부부생활에 대한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초기에 제공함으로써, 결혼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문제해결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이혼 및 여러 배우자와의 자녀출산 등을 감소시킴으로써,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책임있는 아버지 역할 프로그램'(responsible fatherhood programs), '건강한 결혼계획 (Healthy Marriage Initiative)' 등을 통해, 결혼준비, 안정된 가정을 위한 부부관계 개선 상담서비스, 부모역할교

육 등을 제공하여 자녀양육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책임지는 아버지가 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정책 및 서비스 운용에 관한 미국의 경험은 한국사회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미혼모 출산비율이 미국보다 적은 한국에서, 자녀양육비 정책은 주로 이혼 후 양육비 확보와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다(박복순, 2006; 성정현 외, 2001; 정현수, 2005; 차선자, 2006). 그동안 아동양육비 지급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급이행을 강제할 법적, 행정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양육비 지급이행 문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주로 여성)와 자녀의 복리를 위협해 왔다.

2009년 11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는 양육비 확보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대법원, 2009).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당사자 간 협의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 집행력을 부여하고, 양육비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양육비를 2회 이상 제공하지 않은 경우, 월급에서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양육비 지급의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대법원, 2009). 이러한 양육비 이행집행의 강화와 함께, 실제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저소득층 부모를 위한 취업 및 직업훈련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연구자료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사에서 부모의 결혼여부 등 가족구조의 특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부모가 재혼을 하였는지, 가구구성원 중에서 자신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가 누구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할 실정이다. 이는 이혼 후 독신가정과 재혼가정의 비율을 추정하고, 이들 가구에서 양육비 지급실태를 파악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결혼상태 및 가구구성원 조사에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밀한 조사항목을 첨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아버지 측면의 가족구조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였다. 둘째, 해당자녀 어머니가 재혼/동거하는 경우, 아버지의 비공식 양육비 제공 등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 의사결정은 어머니의 새로운 배우자(해당 자녀의 의붓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정도과 관련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아버지가 재혼/동거하는 경우, 아버지의 새로운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 자녀에 대한 비공식 양육비 제공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석자료의 제약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 양육비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상호의존적 특성 및 양육비 제공에 대한 태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셋째, 횡단면적 자료로 인해서, 가족구조의 다양한 특성과 아버지의 비공식 양육비 수준간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가족구조의 변화가 아버지의 비공식 양육비 지출수준에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넷째, 위스컨신 주의 복지프로그램과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에 참여한 빈곤층 어머니를 배우자로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주, 빈곤층 등 다른 인구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어머니 가구의 가족구조에 대한 상세한 자료수집을 통해, 어머니 가구와 아버지 가구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패널자료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구조의 변화가 실제로 아버지의 비공식 양육비 제공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연간 비공식 양육비 수준 뿐만 아니라, 가족구조가 다양한 유형의 비공식 양육비 제공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에 관한 분석이 요구된다. 넷째,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양육비 제공은 자녀와 만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협력적 부모 관계 등 자녀양육과 관련된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적 특성, 자녀와의 만남의 빈도, 형태 및 만족도 등 다양한 참여양상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김영희 · 한경혜, 2006).

참고문헌

- 김영희 · 한경혜. 2006. “이혼 후 비양육부모의 자녀와의 접촉 및 관계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4(8): 23-32.
- 박복순. 2006. “양육비 확보에 관한 법안 검토” 『가족법 연구』 20(3): 73-102.
- 법무부. 2009.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시행”. 법무부 보도자료. 2009.8.6.
- 성정현 · 송다영 · 정미숙 · 한정원 · 김진. 2001. “재판이혼 사례를 통해 본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실태와 대안” 『사회복지연구』 18(가을): 29-58.
- 유희정. 2005. “이혼 후 비양육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및 협력적 부모역할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185-217.
- 정현수. 2005. “이혼시 자녀양육비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가족법 연구』 19(1): 255-306.
- 차선자. 2006. “적정양육비 산정 기준을 위한 제안”. 『가족법 연구』 20(3): 103-130.
- 통계청. 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보도자료.
- 한경혜 · 김영희. 2004. “이혼여성의 전배우자와의 관계 및 협력적 부모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가족학회지』 6: 103-128.
- 홍백의 · 박은주 · 박현정 · 박진. 2009. “결혼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3): 307-328.
- Ahrons, C. and L. Wallisch, 1987. “Parenting in the Binuclear Family: Relationships between Biological and Stepparents.” in K.Pasley and M. Ihinger-Tallman, eds.,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Current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pp.225-256.
- Argys, L. M. and H. E. Peters, 2003. “Can Adequate Child Support be Legislated? Responses to Guidelines and Enforcement.” *Economic Inquiry* 41(3): 463.
- Brown, S. L. and A. Booth. 1996. “Cohabitation Versus Marriage: A Comparison of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668-678.
- Caspar, E. et.al. 2001. “Technical Report 4: Samples and Weightings.”, in *W-2 Child Support Demonstration Evaluation, Phase I: Final Report. Vol. III: Technical Reports*, edited by D. R. Meyer and M. Canci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 Cancian, M. D. and D. Meyer. 2006. “Alternative Approaches to Child Support Policy in the Context of Multiple-Partner Fertility.” IRP Discussion Paper.
- Carlson, Marcia J. 2006. “Family Structure, Father Involvement and Adolescent Behavioral Outcom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1): 137-154.

- Carlson, Marcia J. and Frank F. Furstenberg, Jr. 2006. "Th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Multipartnered Fertility among Urban U.S.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3): 718-732.
- Carlson, Marcia J. and Sara S. McLanahan. 2006. "Strengthening Unmarried Families: Could Enhancing Couple Relationships Also Improve Parenting?" *Social Service Review* 80(2): 297-321.
- Clark, S. and C. T. Kenney. 2006. "Are Changing Family Structures Redirecting the Flow of Mothers' and Fathers' Financial Transfers to Their Adult Children?"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Los Angeles, CA. March 2006.
- Cherlin, Andrew J. 1981. *Marriage, Divorce, Remarri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erlin, A. J. 2000. "Toward a New Home Socioeconomics of Union Formation." in Linda Waite, Christine Bachrach, Michelle Hindin, Elizabeth Thomson, and Arland Thornton, eds., *Ties that Bind: Perspectives on Marriage and Cohabitation*. Hawthorne: Aldine de Gruyter. pp.126-144.
- Cooksey, E. C., and Craig, P. H. 1998. "Parenting from a distance: The effects of paternal characteristics on contact between nonresidential fathers and their children." *Demography* 35(2): 187-200.
- Cox M. J. and Paley B. 1997. "Families as system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243-267
- Duncan, G. J., K. A. Magnuson, and J. Ludwig. 2004. "The Endogeneity Problem in Developmental Studies."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1(12): 5980.
- England P. and N. Folbre, "Involving Dads: Parental Bargaining and Family Well-Being." in *Handbook of Father Involvem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edited by C. S. Tamis-LeMonda and N. Cabrera.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Furstenberg, F. F and A. Cherlin. 1991. *Divided Families: What happens to children when parents par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urstenberg, F. F. and R. B. King 1999. "Multi-Partnered Fertility Sequences: Documenting and Alternative Family Form." *The Annual Meetings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 Graham, J. W. and A. H. Beller. 2002. "Nonresident Fathers and Their Children: Child Support and Visitation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in *Handbook of Father Involvem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edited by C. S. Tamis-LeMonda and N. Cabrera,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Guzzo, K. B. and F. F. Furstenberg, Jr. 2007a. "Multipartnered Fertility Among Young Women With a Nonmarital First Birth: Prevalence and Risk Factors."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9: 2938.
- Guzzo, K. B. and F. F. Furstenberg, Jr. 2007b. "Multipartnered Fertility Among American Men." *Demography* 44(3):583-601.
- Harris, K. M. and S. Ryan 2004. "Father Involvement and the Diversity of Family Context." In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Father Involvement*, edited by R. D. Day and M. E. Lamb.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93-319.
- Hofferth, S. L. 2006. "Residential Father Family Type and Child Well-Being: Investment Versus

- Selection." *Demography* 43: 53-77
- Hofferth, S. and Anderson, K. G. 2003. "Are All Dads Equal? Biology Versus Marriage as a Basis for Paternal Investment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1): 213-232
- Huang, C., Pouncy, H. 2005. "Why Doesn't She Have a Child Support Order? Personal Choice or Objective Constraint." *Family Relations* 54: 547-557.
- Manlove, J. et.al. 2008. "Factors Associated With Multiple-Partner Fertility Among Fa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 536-548.
- Manning, W. D. and P. J. Smock. 1999. "New Families and Nonresident Father-Child Visitation." *Social Forces* 78(1): 87-116.
- Manning, W. D. and P. J. Smock. 2000. "Swapping Families: Serial Parenting and Economic Support for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1): 111-122.
- Manning, W. D., S. D. Steward, et al. 2003. "The Complexity of Fathers' Parenting Responsibilities and Involvement with Nonresident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24(5): 645-667.
- Meyer, D. R. and M. Cancian. 2001. *Final Report: W-2 Child Support Demonstration Evaluation. Volume 1: Effects of the Experiment*. Madison, WI: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 Meyer, D. R., M. Cancian, and S. Cook. 2005. "Multiple Partner Fertility: Incidence and Implications for Child Support Policy." *Social Service Review* 79(4): 577-601.
- Mincy, R. 2001. "Who should marry whom?: Multiple partner fertility among new parents." APPAM Research Conference, Nov.
- Nepomnyaschy, L. and I. Garfinkel. 2007. "Child support enforcement and fathers' contributions to their nonmarital children." CRCW working paper, 2006-99 FF.
- Nepomnyaschy, Lenna. 2008. "Child Support and Father-Child Contact: Testing Reciprocal Pathways." *Demography* 44: 93-112.
- Orbuch, T. L., A. Thornton, et al. 2000. "The Impact of Marital Quality, Divorce, and Remarriag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Marriage & Family Review* 29(4): 221.
- Pirog, M. A. and K. M. Ziol-Guest. 2006. "Child Support Enforcement: Programs and Policies, Impacts and Question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5(4): 943-990.
- Pollak, R. A. 1985. "A transaction cost approach to families and household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3: 581-608.
- Pollak, R. A. 2000. "Theorizing Marriage." in *The Ties That Bind: Perspectives on Marriage and Cohabitation*, edited by L. J. Waite. New York: Aldine de Gruyter., pp. 111-125.
- Seltzer, J. A. 1991. "Relationships Between Fathers and Children Who Live Apart - the Fathers Role After Separ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1): 79-101.
- Seltzer, J. A. and S. M. Bianchi. 1988. "Children's Contact with Absent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3): 663-677.
- Seltzer, J. A. and Schaeffer, N. C. 2001. "Nonresident fathers' involvement with children: A look at W-2 families." In *W-2 Child Support Demonstration Evaluation, Phase 1: Final Report. Vol. II: The Well-Being of W-2 Families*, edited by D. R. Meyer and M. Canci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 Soboleski, J. M. and King, V. 2005. "The importance of the coparental relationship for nonresident fathers' ties to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7: 1196-1212.
- Sorensen, E., and Zibman, C. 2001. "Getting to know poor fathers who do not pay child support." *Social Service Review* 75(3): 420-434.
- Teachman, J. D. 1991. "Contributions to Children by Divorced Fathers." *Social Problems* 38(3): 358
- Weiss, Y. and R. J. Willis. 1985. "Children as Collective Goods and Divorce Settlement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3): 268-292.
- Wellman B. and Berkovitz 1988. *Social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dmer, E and Kellerhals, J. 2006. "Embedded parenting? The influence of conjugal networks on parent-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3(3): 387-406.
- Ziliak, J. P., and Kreckler, M. L. 2001. "Nonresponse in the Survey of Wisconsin Works Families." Technical Report 6 in *W-2 Child Support Demonstration Evaluation, Phase 1: Final Report. Vol. III: Technical Reports*, edited by D. R. Meyer and M. Canci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Nonresident Fathers' Informal Support to Children -Focusing on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s-

Choi, You-Seok
(Hallym University)

Using the Survey of Wisconsin Works Families, the survey of the Child Support Demonstration Evaluation (CSDE) project in Wisconsi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family structures of nonresident fathers and resident mothers are associated with nonresident fathers' economic contributions, measured by the level of informal support provided to their children living in the mothers' households.

Findings show that the level of informal support is associated with not only individu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nonresident fathers and resident mothers, but also family structures and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child support arrangements and the CSDE experiment. Both mothers' repartnering with another man and fathers' repartnering with another woman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informal support. Fathers who lived together with mothers when their children were born provide more informal support than do fathers who did not. Fathers' multiple partner fertility is not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informal support provided. Among fathers who have children with multiple partners, fathers provide more informal support to their children born by their first partner.

Fathers who have multiple children with the mother of the focal child provide more informal support. Fathers who have other biological children living elsewhere provide less informal support. Fathers who pay higher levels of formal child support also provide higher levels of informal support. Fathers associated mothers assigned to the CSDE experiment group provide more informal support. The findings suggest that child support programs may increase informal support, thereby improving the well-being of resident mothers and their children living in poverty.

Key words: Family Structures, Child Support, Informal Child Support, Nonresident Fathers, Multiple Partner Fertility

[논문 접수일: 09. 11. 12, 심사일: 09. 11. 30, 게재 확정일: 09. 12. 28]